

「학술지 「한국교육」 윤리지침」

[성과확산실]

2008. 6. 1 제 정
2011. 4.15 개 정
2012. 2.20 개 정
2024. 4. 1 개 정
2025. 2. 7 개 정

제 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술지 「한국교육」운영 지침 제14조제2항에 의거해 학술지 「한국교육」의 윤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5. 2. 7 개정>

제 2조(적용대상) 이 지침은 학술지 「한국교육」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하여 발간과 관련된 제반 행위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.

제 3조(연구윤리) 연구자(투고자)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,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학문적 수월성과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며, 제반 연구활동에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학자적 양심에 기초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.

제 4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연구 부정행위: 위조, 변조, 표절을 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, 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.
2. 위조: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변조: 연구자료 및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
4. 표절: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, 과정,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, 이미 게재·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·출간하는 ‘자기표절’ 행위도 포함한다(표절과 관련한 부가정의 및 적용은 교육부의 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’ 및 한국연구재단의 ‘연구윤리 가이드라인’ 등을 준용한다).
5. 부당한 저자 표시: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6. 자료 등의 중복사용: 이미 발표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 5조(투고 등) ①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. <2025. 2. 7 개정>

②국내외 학술지나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. <2025. 2. 7 개정>

③분할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2025. 2. 7 개정>

제 6조(논문의 수정) 투고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

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해야 한다.

제 7조(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)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8조(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
2.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9조(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,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.

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④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,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
⑥위원회는 윤리지침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) ①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서면,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.

②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,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편집위원회 및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,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.

④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⑤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,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⑥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⑦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11조(연구진실성 검증 절차)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, 본조사,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) ①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,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.

②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연구진실성 검증 대상)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. 다만,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예비조사)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,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.

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

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15조(본조사)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,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.

제16조(연구진실성에 대한 입증)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. 다만,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.

제17조(연구진실성에 대한 판정)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

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
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,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,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, 그 이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,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.

제18조(연구진실성에 대한 조사결과의 처리)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제보의 내용
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
3.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
4.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5.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
6. 관련 증거 및 증인
7.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

③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,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. 이 밖에 「한국교육」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.

⑥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재심의)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,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,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,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윤리지침 준수 협약서) ① 학술지 「한국교육」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 <2025. 2. 7 개정>

②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별지서식 1의 윤리지침 준수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, 자필서명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「한국교육」 윤리지침 준수 협약서

1. 연구자명단

연구참여자	소속기관

2. 논문제목

--

위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로서 학술지 「한국교육」에 투고하면서 연구자의 윤리와 진실성에 관해 학술지 「한국교육」 윤리지침을 숙지하고 확인하였으며, 한국교육개발원이 요구하는 제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 연구자: (인)